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 성판매 여성의 '인권' 탐색을 위한 시론

원 미 혜(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 들어가는 말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인권' 개념이 성매매를 주제로 한 논쟁의 무대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권'은 자유주의에 기반 한 시민권적 '권리'에 대별하여, 인간 기본권의 '보호'를 강조할 때 쓰인다. 힘이 불균등한 사회에서 동일한 '권리'에의 요청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에서 성판매 여성¹⁾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여성을 성산업에 매어있도록 강제하는 구조적 조건들이 비가시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인권'개념은 여성을 성산업에 유입되도록 강제하는 내·외적 조건,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성산업의 착취구조 등의 문제를 가시화하였으며, 법, 의료, 상담, 직업훈련, 경제적 지원 등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보호' 정책의 시행을 통해 관철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정책 이상으로 성판매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 '근절' 정책의 성패의 절반은 성판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전업을 지원서비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를 내건 성매매방지법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직후 '생계보장',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직 성판매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업주의 사주', '스톡홀름 증후군' 등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1) 성을 파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성매매 여성', '성매매된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성매매 생존자', '성노동자(sex worker)', '성산업 종사자'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판매 여성' 또는 성판매자(장필화외, 2001)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판매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판매자가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판매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판매자가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듯 판매행위와 구매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행위가 당사자의 생애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과 성판매자들을 일방적인 사회구조의 피해자나 일탈자가 아닌 다양한 조건에서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판매자는 '성판매 경험자'라는 의미로, 현재 성판매를 하고 있는 여성과 탈성매매한 여성 모두를 포함하며(문맥에 따라서 '탈성판매 여성/탈성매매 여성', '현직 성판매 여성/현직 여성' 등으로 구분한다.), 집결지 또는 산업형 성판매뿐 아니라 개인형 성판매 경험을 포괄한다.

이 주장의 복합성은 이들이 업주의 이해관계와 결탁되어 있다든가, 성매매를 (좋지는 않지만) ‘성적 실천’으로 본다든가,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한다든가 등의 원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성매매 근절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여성들이 놓인 현실을 무시한 채 일 부일처제에 기반 한 성규범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은 중산층 계급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성매매를 지속할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자신들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인 배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복지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행위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은, 성판매 여성의 복지는 ‘인권’과 ‘권리’의 문제가 상호보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과는 매우 다른 사유를 필요로 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은 그동안 ‘인권’ 문제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러한 당혹감과 혼란은 성매매 또는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자신’에 대한 성찰과 뒤엉켜, 과연 ‘이러한 혼란은 무엇 때문인가’, ‘성판매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피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본 논문이 갖게 되는 주요관심은 성매매를 둘러싼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이며, 구체적으로는 성판매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가능하며, 어떤 관점과 태도로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물음에 선명하고 단일한 답을 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성판매자의 경험과 ‘인권’이 어떻게 가시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 관련 연구와 정책을 분석하여 성판매자를 다루는 담론의 지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성판매자의 인권 개념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인권 개념의 재구성은 성판매 여성을 둘러싼 낙인의 구조, 주변적 소수자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2.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와 과제들

한국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의 축적은 성산업의 성장과 분리될 수 없었던 역사를 갖는다. 반면, 성을 파는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도덕적 비난과 경제적 필요 사이에 성을 파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인권’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의 ‘인권’은 ‘필요’와 ‘비난’이라는 양면적이며 상호규정적인 순환회로 속에서 철저히 비가시화 되어왔다. 가장 열악한 여성의 ‘인권’이 떠오르지 못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를 갖는다. 성판매자에게 차별적으로 시행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자의 권리와 성을 구매하는 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현실에서 성산업에 고용된 자들의 ‘인권’ 문제는

말해 질 수도, 드러날 수도,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도 없었다.

이제까지 비가시화된 성판매자의 ‘인권’의 문제는 주로 연구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왔고 문제해결의 토대가 되어왔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가시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갖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가시화되고, 어떻게 가시화되는가도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성판매자에 대한 관련 연구와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성매매 관련 연구의 경향과 남겨진 과제: ‘문제’ 중심적 접근과 방법론의 문제

성판매 여성에 관한 지식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은 성매매를 둘러싼 구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식생산과정은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고 정책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재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지난 40여 년간의 성매매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분과별·연대별 성매매 관련 학위논문 현황²⁾

분과 \ 연대	1960	1970	1980	1990	2000	총계
사회복지	1	2	6	5	29	43
법학/행정/정치	-	2	4	4	16	26
의료/보건학	4	2	6	1	3	16
신학/기독교	1	2	-	5	5	13
사회학/인류학	-	3	2	2	4	11
교육학	-	1	1	-	8	10
여성학	-	-	1	3	3	7
국문학	-	-	-	-	2	2
역사학	-	-	-	1	-	1
언론홍보학	-	-	-	-	1	1
방재공학(소방)	-	-	-	-	1	1
총 계	6	12	20	21	71	130

2) <표-1>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총 5곳의 전자도서관 검색을 통해 수합된 성매매관련 학위논문 총 130개를 전공분야별, 연구연대별로 분류한 것이다.(2005년 9월 30일 현재) 검색어는 “성매매, 매매춘, 매음, 매매업, 매춘, 윤락, 매음녀, 매춘여성, 윤락여성, 요보호여성,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성매매피해 여성, 성적 서비스, 유흥업소, 성산업, 특수집대부”로 하였다. 비행청소년, 성범죄, 섹슈얼리티 등을 다루는 논문에서 그 일부로 성매매를 다루고 있거나 ‘기생’과 관련된 연구물들은 제외하였다. ‘기생’연구는 국문학, 역사학, 의류학, 기타 예술분과 등에서 기생의 복식, 머리, 화장법, 기녀제도, 기생문학, 공연 등을 주제로 비교적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녀’는 현재의 성판매여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시켰으며, 근대기 공창제도에 대한 연구는 포함시켰다. 학회지, 학술행사, 단행본 등을 통한 연구발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위논문만으로 연구경향 전반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학위논문을 통해 연구경향의 단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1>은 성매매 관련 학위논문이 시기별, 분야별로 어떤 볼륨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 관련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법학, 보건학, 신학, 사회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순이다. 연대별로는 2000년대 들어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고, 성매매를 다루는 분과도 좀더 확장되었다. 60-80년대까지는 전염병(성병 등)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주제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성판매 여성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탈성매매를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청소년성매매의 이슈화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한편, 사회학과 여성학의 경우, 공창제 연구, 성판매 여성, 십대여성, 외국여성의 성매매 등에 관한 경험연구와 구조분석이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1960년대-90년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연구를 모두 합친 것(59개) 보다 2000년대 4-5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71개)가 더 많다(84%증가)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성매매 이슈가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수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 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애인'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이며, 성폭력 관련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3분의 1정도이다.³⁾ 이는 성산업의 거대한 규모, 33만에서 120만까지 추정되는 성산업 종사자 수, 성판매자의 심각한 인권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론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경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첫째, 연구주제와 대상의 제한성이다. 어떤 연구 분야의 주제와 연구자의 관점은 담론의 지형과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연구자가 갖는 이러한 제한성은 연구주제와 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어떤 주제는 빈번하고, 어떤 주제는 부재하다. 연구주제나 대상은 외국인성매매의 경우처럼 새로운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제의 편중성은 연구가 사회적 관심과 연구자들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후반 청소년성매매의 이슈화와 제도화를 전후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성구매자 연구, 노인 성매매, 외국인성매매, 성매매 정책 홍보, 집결지 소방 대책 등 새로운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판매자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다양한 연구주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부재한 것은 성매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상상력을 제한한다. 이는 (학위논문 외에) 연구의 대부분이 국가주도의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는 2000년대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구의 프레임에 제한하고 있다.

3) 국회도서관의 검색결과, '장애인'관련 학위논문은 2천5백여 건이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 관련 연구는 127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이슈는 166건(그러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으로 나타난다. '마약'연구는 222건이고, '성폭력'의 관련 연구는 360건이다. 물론 동성애, 성매매 연구도 대부분 2000년대에 급증한 것인데, 2000년대에 들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나 사회복지적 접근이 확장된 것과 연관된다. 성매매 연구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유는 성매매방지법을 전후로 한 사회적 이슈화와 성판매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연구를 촉발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다수의 연구들이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매매, 성판매 여성의 인권문제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기 보다는 어떤 사실의 입증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2000년대를 망라하여, 다수의 논문들이 “실태와 대책”이라는 거의 유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실태’는 곧 ‘문제적 현황’과 동일시되며, 대상자의 ‘외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로 취급된다. 실태중심의 연구는 성판매 여성의 개인적 상황(생계, 빚, 가족 등)과 이를 둘러싼 구조적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성판매자의 삶의 조건을 역동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극히 부족하다.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연구물들은 사회구조적 상황보다는 개인적 상황(가족관계, 빚, 심리와 태도, 정신적 육체적 질병, 탈성매매 방해요인 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학이나 여성학은 좀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접근은 구조환원론에 매몰되어 개인의 행위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낳고 있으며, 문제중심의 연구는 성판매 여성들을 문제집단으로 타겟화 할 우려를 낳고 있다.⁴⁾

셋째, 자료에 대한 맥락적 분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와 성판매 경험에 대해 ‘결정론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물의 일차적인 문제는 논의구조 자체가 지극히 평면적이고 순환적이라는 데 있다. 이들 연구는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있지만,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역동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성판매 여성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다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다른 직업의 여성들과의 설득력 있는 비교분석은 부재하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활에 어떤 악영향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자활의 어려움을 만드는 다른 악영향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매매 행위와 질병과의 상관성, 성산업의 환경과 질병과의 관련성, 성판매 여성과 다른 여성 집단과의 비교분석, 다양한 성매매 유형에 따른 비교 설명없이 어떤 통계적 내용이나 진술을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로 취급한다. 연구가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으로써 설명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이 중요하다. 비교분석은 하나의 현상이나 대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어떤 문제를 둘러싼 지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넷째, 연구대상 간의 차이와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 대부분의 연구물은 성판매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성매매를 단일한 경험으로 취급해 왔다. 특히 연구의 대부분은 현직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탈성매매 여성(쉼터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쉼터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술하는 모든 경험은 성판매 여성 전체의 경험으로 환원되어 왔다. 성매매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업소의 유형에 따라 어떤 경험적, 인식적 차이가

4) 최근 우리사회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접근방식의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문화기술지적 관점과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문제중심적 접근과 분석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해석을 통해 그들의 강점 및 역량(empowerment)을 파악하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기연(2005)을 참조하라.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연구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대상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으며 단 한사람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는 그들이 가진 문제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분석이며, 그 문제의 상황과 맥락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에 대한 조사(인터뷰나 통계)는 전적으로 그들의 하는 ‘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맥락화한 지식과 해석이 중요하다.⁵⁾

예를 들어 현재적 조건(쉼터에 있는 여성과 현직여성, 탈성매매 했으나 쉼터에 있지 않은 여성 등), 경험한 성매매의 유형(산업형성매매와 집결지성매매, 개인형성매매)과 업소 등에 따라 여성 간의 경험에는 선명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적 조건이 분석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산업은 구조적 동형성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형태, 지역, 관행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매매 공간에 있는 여성들의 생활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일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⁶⁾

이상의 연구경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통계조사나 경험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경험’이나 ‘실태’가 그자체로 ‘사실’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여성부는 집결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폐기한 적이 있다. 이유는 여성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업주들의 개입이 연구의 객관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연구대상과 연구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동형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관계, 조사시 상황, 대상자의 정치적 판단과 의도, 조사 당시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요소들, 대상자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은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성판매 여성들을 둘러싼 구조를 파악하고, 개인이 가진 문제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좋은 의도

5) 지식사회학, 프랑크푸르트 학파, 상호행동주의,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의 ‘객관성’과 ‘실증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양적 방법론을 쓰는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나 다른 기록 증거같은 매개물을 통해서만 연구대상과 만남으로써 그 결과물은 탈맥락화된 인간경험의 단편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백인’ ‘남성’의 관점으로 끌어온 분석범주와 해석적 틀을 이용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Sprague & Zimmerman은 그동안 양적방법론을 쓰는 실증주의 연구가 (1) 특수한 사회질서 안에 뿌리박혀있다는 점, (2) 경험적 발견들이 그 밑에 자리한 사회과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 (3) 지식을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4) 관찰자에 깊이 새겨진 편견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양적방법론은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증거, 특히 다양한 형태의 억압의 증거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광범위한 변화를 위한 증거는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뿐 아니라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가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6)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성매매 현장은 공통성 못지않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한다. 성매매를 주로 하는 업소인가, 집결지 성매매의 경우도 각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외출이 자유로운가, 감금이 있는가, 어떤 업주인가, 선불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가,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가, 집세를 받는가 아닌가, 성거래 이전에 술과 성적인 유흥이 포함되는가, 긴밤 손님을 받는가, 외출이 자유로운가. 감금이 있는가 등은 성산업의 일반적인 힘겨운 현실(빛과 폭력)에서 부차적인 것만은 아니다.(김애령·원미혜 외, 2004)

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물들은 ‘문제중심적’ 연구들과 방법론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도 연구주제를 제한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연구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구조 환원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문제를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연구의 틀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사실 입증에 치중하고, 성매매경험의 차이와 조건 분석은 부재한 채, 성매매 경험을 단일하게 다뤄 왔다. 이는 동일한 집단 안에서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순환논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들이 연구대상자 등 연구방법의 한정성을 넘어서서 성판매 여성을 설명하는 고정된 ‘사실’로 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성판매 여성과 관련된 연구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주제와 가설과 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결정론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물음과 연구주제의 개발은 성판매자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둘째, 양적 방법을 사용하든 질적 방법론을 사용하든, 어떤 방법론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면밀한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반대되는 사례와 비교분석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집단, 다른 요인, 다른 시기, 개인 간의 ‘비교’가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자가 가지는 문제를 고착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러한 ‘차이’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 대한 분석은 바로 변화를 위한 시작이다. 여성들이 놓인 구체적인 조건을 바꿈으로써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뿐 아니라, 연구구조 설정에서도 분석/해석, 피드백 과정까지 연구 전반에 ‘당사자’를 공동연구자 등의 참여자로 함께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자의 ‘성실성’은 더욱 필요해진 덕목이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실에 직면할 때 자기 단절을 통해 자신을 현실에 개방하는 것,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한 관점이 아니라, 세밀한 분석과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다.

2) 법⁷⁾, 정책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들: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이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포섭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수반하며, 그 자체가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다. 한국사회에서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 이래로 요보호자(여성)는 사회복지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으며, ‘여성복지’의 고정적인 자리에 배치되어 왔다. 법적으로 성판매자들에게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청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러한 정책은 성

7)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을 통한 성산업 축소를 성매매정책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매매 발생의 근원을 ‘성판매자’에게 두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대안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는 정책논리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실제 윤방법의 ‘보호’정책은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가 되어 왔다. 정책시행은 남성구매자에게는 처벌면제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판매자에게는 ‘요보호’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보호시설에서 1년 이상의 감금을 가능하게 했으며⁸⁾, 성병관리, 특정지역(집결지 및 기지촌) 존치 등 성매매를 용인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되어왔기 때문이다(원미혜, 1997). 윤방법 하의 사회복지 대상으로서의 성판매 여성의 ‘인권’은 ‘요보호자’라는 명명이 말해주듯이, 사회윤리를 위해 감시되고 관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한정된 의미로 존재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업주와 알선자를 강력히 처벌하며, 성판매자의 탈성매매를 보호, 지원한다는 외형적 틀에서는 윤방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것은 ‘인권’의 가치가 명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이 법이 ‘인권보호’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에는, 자원부족, 정부의 정책경험의 부재, 전문 활동가의 부족, 타부서와의 원활한 연계 부재, 시민들의 의식부족 등의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 자체가 갖는 한계도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 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성매매방지법 상의 ‘성매매 피해자’ 규정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용어는 개념과 용어상의 혼란과 성별(gender)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포한다. 성매매는 팔고 사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매매 피해자’는 성구매자(성구매 남성, 성구매 여성), 성판매자(성판매 여성, 성판매 남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누구에 의한 어떤 피해인가도 문제시될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 중간매개자 모두를 처벌하는 동법에서 성매매 피해자 규정¹⁰⁾이 중요한데, 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는 성매매라는 불

8) 보호시설에로의 강제입소 논란과 강제입소에 대한 위헌판결은 1995년 윤방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으로 입소생 40여명이 감금된 채 사망한 사건은, 성판매를 경험한, 혹은 성판매를 할 것이 현격하게 우려되는 요보호자라는 미명 하에, ‘국가’에 의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여성들이 존재해 왔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내가 만난 현직 성판매 여성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보호시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제입소를 원칙으로 강압적이고 열악한 환경의 보호시설을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었으며, 주변의 경험자로부터 혹은 소문으로 이러한 정보를 듣고 ‘공포스러운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9)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일군의 남성들은 성구매자의 행복추구권을 외치는 반면, 많은 남성들은 “이제, 성매매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몸을 사리기 시작한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병환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의사들은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원론대로라면 이제 어디서든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할 수 없다. 성매매는 남성들 사이에서 관용되는 일상적 일탈이 아니라, ‘범죄’이다. 문화적으로도 성매매는 이전처럼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매우 ‘수치스런’ 경험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또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둘째,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셋째,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넷째,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성매

법행위에 대한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신이 소위 '정상적인' 경우) 그 피해는 인신매매의 강압이나 업주에 의한 피해로 제한되며, 업주에게서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업주가 없이 성을 파는 여성, 개인형 성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 '범죄자'가 된다.¹¹⁾ 이는 동법이 '구매자-업주-판매자'의 모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은 사실, 업주가 있는 유형의 성매매로 제한된다. 게다가 구매자, 동료, 공권력 등 피해를 유발하는 다른 대상을 포괄하지 않고 '피해'의 내용규정을 '업주'에 대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자로부터의 폭력문제 등 다양한 피해의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논쟁이 되는 것은 피해에 대한 입증이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화'한다는 점에 있다.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것은 여성을 피해자와 일탈자로 구분 짓거나 행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게다가 무엇을 '피해'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피해의 명명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화는 한 집단을 전형적으로 문제화하고 '경험'에 대한 위계화를 낳을 수 있다.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화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성매매 근절, 탈성매매' 라는 선명한 정책목표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이다. 정책에 있어 목표는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근절론'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 접근의 목적은 탈성매매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며, 실제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해도, 탈성매매한 여성의 요구와 현직 여성들의 요구와 필요는 상이하다. 성매매근절을 표방하는 성매매방지법 이후의 강력한 탈성매매 정책은 현장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킨다. 성매매 시행 이후, 집결지사업이 시작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¹²⁾, 집결지외에 다양한 성산업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은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탈성매매라는 선의 안과 밖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삶의 전략을 가진 주체들이다. 각기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에 중심으로 다가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탈성매매와 안정적인 전업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의지도, 그것을 받는 여성들의 조건과

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나 신변보호, 심리의 비공개 등이 보장된다. 또한 경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해야 한다. 성매매범죄 신고자, 성매매피해자의 조사나 증인신문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며, 증인신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의 신변안전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11)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2개월 간 6,791명이 단속되었다. 여기에는 업주(849명), 성매수남(2,352명), 성판매여성(660명), 기타(502명)가 포함된다. 성매매자 대부분은 불구속 조치되었다. 그러나 성판매자 중 7명의 여성은 "전단을 돌리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속, 영장신청되었다.(이금형, 2004: 37-38) 반면, 2005년 7월4일-9월3일 100일 집중단속에선 단속에 걸린 성판매 여성 706명은 모두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불입건되었다(이금형, 2005: 6).

12) 집결지 자활사업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직후 2지역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10개 지역 1,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정봉엽, 2005)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필요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애령·원미혜 외, 2004)

셋째, 성에 대한 경직된 관점과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정책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은 성매매가 범죄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캠페인들은 성에 대한 규범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성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조건은 또다시 여성의 경험을 제한한다.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는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쉼터 등에서 입소자와 실무자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보수적 성담론 하에서 성판매자는 유혹녀, 해픈 여성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경험은 ‘더러운 것’, ‘나쁜 것’으로 부정되어야 할 과오처럼 취급될 수 있다. 성판매를 경험한 여성에게 이는 과거의 체험이 송두리째 부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성에 기반한 성도덕, 성(sexuality)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또 다른 경계짓기의 위험성을 낳을 수 있다.

이제까지 성매매, 성판매 여성에 대한 담론으로 연구와 정책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성판매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얼마나 제한적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객관성’과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연구와 정책의 공론화된 장에서조차 성판매 여성은 범죄자이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 또는 ‘피해자’라는 전제가 강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성판매자의 인권을 접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관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인권’ 개념의 재구성: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성판매자

‘인권’은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다. ‘누가’ ‘어떤’ 인권을 문제 삼는가에 따라 ‘인권’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다양한 목소리들은 성매매 ‘합법화론’ 대 ‘근절론’,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남성중심성’ 대 ‘여성주의’ 등의 원론적 논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우리사회가 시민적 권리와 ‘인권’의 내용을 다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의 요청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원칙과 상식은 충분하지 않은 물음이며, 충분하지 않은 답, 심지어는 억압적 상황을 비가시화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기존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다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성판매 여성은 ‘소수자’인가? :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이해

먼저, 성판매자는 ‘소수자’인가? 이 물음에는 ‘소수자’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방향의 이해가 공존한다. 하나는 성적 위계 속에서 ‘나쁜 성’(bad sex)으로 취급되는 성판매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일부일처제라는 ‘중심적’ 가치의 성적 질서 밖에 존재하는 정체성과 관련된다. 여기서 성판매자는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자’이다. 소수자 정체성은 인정투쟁을 통해 지배적인 성적 위계에 도전하고 중심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적극적 존재가 된다. 다른 하나는 좀더 확장된 의미에서, 중심성·정상성에서 배제된 열악한 존재로서의 ‘소수자’의 의미이다.¹³⁾ 여기서 ‘소수자’는 ‘소외된’ 존재, 사회적 약자로 이해된다.¹⁴⁾

통상적으로 ‘소수자’는 후자의 의미, 지배질서와 규범에서 주변화된 존재, ‘타자’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소수자 운동’에서는, 전자의 의미가 적극적인 운동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으며, 성판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이 성판매자의 ‘노동자’ 권리 운동을 촉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상이한 개념 접근은 성판매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성애,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소수자의 경우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와 전복적 소수자로서의 지위가 상충되지 않지만, 성판매자의 경우 이 두 층위는 상충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성판매자는 한편으로는 성적 위계에서 주변적이지만, 기존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결코 전복적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도덕적 낙인’의 복합성과 연동된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성(majorité)과 소수성(minorité)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들뢰즈와 가타리, 이진경·권혜원 외역, 2000) 우선 다수성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척도와 규범, 혹은 모델의 형식으로 현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반면 소수성은 새로운 변이와 생성을 통해 그 척도와 규범을 변형시키는 잠재적 변이능력이라 할 수 있다.(이진경, 2002: 323)

이러한 ‘소수성’ 개념을 표면적으로 적용시켜 볼 때, 성판매자들은 일부일처제에 기반 한 성도덕을 위협하는 전복성을 갖는다.¹⁶⁾ 성판매자는 기존 질서 내에서 차별받는 존재이며, 그 가

13) 최협 외(2004)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인, 빈민 등 전통적인 소수자들을 넘어서며 계층, 성, 세대 격차가 커지면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세계화, 냉전체제의 해소에 힘입어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고려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IMF 이후 절대빈곤층, 불안정 취업자, 정신질환자, 흡리스 등 다수의 사회적 부적응자를 생산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14) 전자를 “전복적 소수자” 후자를 “주변인으로서의 소수자”로 명명하고자 하며, 이 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5) 소수자와 소수성의 문제는 수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수가 많아서 남성중심사회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미국에서 백인이 수가 많아서 백인이 다수자가 되고 유색인이 소수자가 된 것은 아니다. 표준적 다수성의 예를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표준어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에서, 혹은 정치적 지리적 중심인 수도권방의 언어라는 점에서, 모든 언어의 모델, 즉 표준이 된다. 그러나 방언이 그 자체로 소수적인 언어는 아니며 방언에 의해 소수적 언어가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성이란 다수성을 변형시키고 변이시키는 성분이며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생성하는 언어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진경, 2002: 316-324); “다수성은 항상적인 것의 권력에 의해 정의되며, 소수성은 변이의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들뢰즈와 가타리, 이진경·권혜원외역, 2000:131)

16) ‘소수(minority)’라는 단어가, 반드시 숫적 개념은 아닐지라도 숫적 ‘열세’를 암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변인

장 일차적 원인은 건전한 성도덕에 입각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낙인을 타파하는 것은 성적 위계에 도전하는, 권리 투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도덕의 차원에서 비난받고 낙인찍히는 성판매 여성의 현실적 존재기반은 지배적인 남성중심적 가치와 제도의 실천에 있다. 즉 그들의 존재는 기존 질서의 위협이 아니라 그것을 온존시키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물론 이 성매매라는 장치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대우를 받아왔다. 즉 섹슈얼리티 위계 안에서 남성의 성구매 행위는 비난이 면제되어 온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지만 비공식적 남성문화 안에서의 성구매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탈이었다. 성적 정상성, 위계질서 안에는 남성은 성을 살 권리가 있지만, 여성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이중적 성(sexuality) 규범이 존재한다.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에서 성판매 여성은 존재해야 하는 남성지배 질서의 유지 장치이며, 동시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탈 행위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성의 극복은 남성에서 성을 살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여성에게 성을 팔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성판매 여성의 주변적 정체성은 그녀를 그곳에 존재하도록 강제하는 힘으로부터 발생한다. 성판매자는 분명 지배적인 성도덕 질서에서 배제된 주변인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성적 소수자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적인 지배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전복적 소수자의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러한 성적 소수자라는 상황을 극대화할 경우, 그래서 성도덕만이 그들의 주변화의 원인인 것처럼 확대될 경우,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중첩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남성중심의 성문화, 성산업의 착취구조 등)을 비가시화 할 수 있다. 배타적 이성애를 인간의 보편적인 것으로 자연화하는 이성애(heterosexual)중심성의 강제 못지않게, 성매매를 강제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경제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판매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동기에는 가난과, ‘섹슈얼리티의 매춘화’¹⁷⁾라는 남성중심사회의 성적 실천의 태도가 깔려있다. 섹슈얼리티 억압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지배적 가치와 사회구조에 공존한다. 즉 사회적 낙인은 도덕적 비난의 결과인 것만이 아니며, 여성을 남성의 이해에 의해 점유되는 존재로 만드는 지배적 가치가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생산하는 일차적인 원인인 것이다. 나아가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 경제적 열악성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적 낙인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관계성’과 함께 작동한다. 성을 파는 여성들은 성매매를 자신의 감정과 분리된 ‘일’, ‘돈벌이’로 말할 때조차도 자신이 가진 관계(가족, 애인, 친구 등)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섹스워커’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기 어렵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두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늘 성매매

(“the marginalized”)이란 단어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한다.(김지혜, 2005) 외국의 경우 다양한 성적 소수집단과 성판매 여성이 연대하는 경우도 있다.

17) 급진적 여성주의자인 베리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 정치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유해한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조직화된 제도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랑, 결혼, 노동 영역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성매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곧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이다. (베리, 김은정 · 정금나 역, 2002)

를 ‘일시적인 일’로, 언젠가는 ‘그만될 일’로 인식한다. 다수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판매 여성들도 가부장제 질서와 배타적 성관계에 기반한 성윤리, 그리고 연애, 결혼, 가족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학생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딸이거나, 누구의 애인인 다중적이며 관계적인 주체로서 여성은, 성매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

성판매자의 주변적 위치에서 갖게 되는 성도덕에 대한 전복성은 일부 요소로 존재할 뿐이다. 성판매자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성매매의 ‘정상화’를 통해 성적 위계를 전복함으로써 생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강제하는 정상성과 지배성에 저항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¹⁸⁾ 성매매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적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지배 가치에 대한 도전, 기존 질서의 전복을 의미할 수 있으며, 성판매자의 인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전복적 소수자 운동이 될 수 있다.

성판매 여성의 ‘소수자’로서의 저항적 위치는 성적 위계질서에 대해서는 전복성을 갖지만 동시에 가부장제의 지배성에선 종속적인, 이중적 포지션을 갖는다. 성판매자의 소수자로서의 전복성과 저항은 ‘성적 위계질서’와 ‘가부장제의 지배질서’가 맺고 있는 관계에 도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 관점에서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접근한다는 것은 성적 소수자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주변성과 성매매를 강제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성판매 여성: 역동적 ‘주체’에 대한 이해

이제까지 성판매 여성들은 극단적으로 형상화된 담론 안에 존재한다. 유흥자, 폭력의 희생자 또는 노동하는 주체(섹스 워커, Sex Worker)로 서사되고 구획된 규정들은 성판매 여성을 특정한 표식에 가두어 왔다. 우선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희생자이거나 성폭력, 인신매매와 감금,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비난을 면책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헤픈 여자’에 대한 이미지 뿐 아니라, 그들의 ‘피해’ 경험은 대변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례나 증거로 차용되어 왔다.¹⁹⁾ 성매매 방지법 이후, 집결지 성판매 여성들의 시위와 노동권 주장은 그 동안 피해자 중심의 논리로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누락된 채 ‘대변’되어 온 역사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성판매 여성의 ‘인권’ 개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판매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주체성과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매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성판매 여성을 해결당사자로 주축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18) 성매매방지법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일부일처제’의 성도덕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에 반대하고 성산업에서 여성들을 구출하고 전업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중산층 중심, 보수적 제도권과 결탁한 사회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도식적 규정이라 생각한다.

19) 성판매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만큼이나 ‘희생자’로서의 표상은, 자신의 관심과 이해에 부합하는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양갈보’라는 비난에는 단순히 ‘헤픈 여성’이라는 성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외국 남성’에게 몸을 판다는 민족주의적 비난이 공존한다. 이러한 비난에 반대하여, 기지춘 여성을 미군에게 희생되는 ‘불쌍한 누이’로 표현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담론은 ‘자국 여성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남성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고무시킨다.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가 성판매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판매 여성의 행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열악한 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돌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제까지 담론은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고정적으로 이해해 왔다. 성판매 여성의 경험의 가시화는 정치적 의미를 갖지만, 그 경험을 본질화하는 위험을 갖는다. 스캇(1991)은 경험을 가시화하는 기획들이 배제되어 온 타자를 드러내고 표준화된 역사에 도전하는 의미를 가질 지라도, 젠더, 정체성 등이 구성되는 방식 자체를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위험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즉, 경험은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 주체들이 애초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이의 시각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라는 문제, 언어(혹은 담론)와 역사의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경험’은 차이를 탐구하는 방법이 되기보다, 그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릴 따름이다.²⁰⁾

여성의 삶의 현상이 다양하듯, 성산업에서 여성이 놓인 구체적인 조건과 경험은 상이하다. 33만에서 120만까지로 추정되는, 그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하나로 분류될 수는 없다. 또한 성판매 경험이 여성들에게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판매 여성들은 다중적 주체성을 소유한다. 성판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의 본질적인 경험으로 고정화하는 것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존재로서의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

역압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일 때, 고정된 주체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도벌은(Sandoval,1991) ‘전술적 주체성(Tactical 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당면 과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 정치학의 한계와 위험을 인식하면서 일시적인 공존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 인종, 성적 위계, 나이, 신체능력 등 역압이 중층적일 때, 한 가지 정치학적 원칙이나 내용만으로 주체를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이’만을 강조할 경우 운동의 행위주체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술적’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상황적이며 맥락적인 존재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술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성판매 여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접근 방식, 즉 그들을 비난하거나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도 열악한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소수자’라는 개념에 입각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성판매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다. 성판매 경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성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업주나 성산업에서의 관계의

20) 스캇(1991)에 따르면, 경험, 증거의 가시화는 경험이 실재적 반영, 지시적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증거는 어떤 가능한 서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증거로 간주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가 서사를 결정하는 만큼이나 서사가 증거를 결정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거가 실제(the real)의 반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연구들은 정통 역사의 인식론적 틀 속에 머무름으로써,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가정과 실천들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험이 자료로 입증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들의 차이를 자연화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항을 그것의 담론적 구성 바깥에 위치시키고, 행위성을 개인들의 내재적 속성으로 구체화하며, 따라서 그것을 탈맥락화시킨다. 스캇에 따르면 경험을 역사화한다는 것은 특정상황에서 위치 짓는 담론들의 효과로서 주체 위치화(subject positioning)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의존성을 더욱 높이게 되는 조건으로 작동된다. 또한 ‘성노동자’로 자신의 처우를 개선할 집단적 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만큼 사회적 낙인은 그들의 열악한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열악한 지위를 강제하는 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매매 경험 자체가 가진 열악성에 있다. 성매매가 자체가 이를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그 자체로 폭력적인 경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착취적인 성산업 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서적, 육체적,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셋째, 성매매를 선택, 유지하게 했던 개인적 조건의 열악함과 그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그 이유이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삶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주변인, ‘소수자’로서의 열악성은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

성판매자의 ‘인권’은 성판매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일 뿐 아니라, 성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되지 않을 권리이다. 그것은 성판매자가 모두가 성매매 구조의 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되어야만 보호될 수 있는 인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로 접근하는 태도는 규정적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성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소수자의 관점은 성판매자의 위치를 구획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물이며 변화 가능한 역동성을 지닌 것으로 전제한다. 그동안 성매매 연구에서 동성애 성매매, 남성 성판매자, 여성 구매자, 외국으로 나간 한국 성판매 여성, 다양한 성적 실천, 권리, 문화 등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성판매 여성 ‘스스로’ 어떻게 당면하는 문제들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가에 대한 노하우, 공동체 문화에 대한 접근 또한 부재하다. 성판매자를 소수자로 접근할 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소수자의 관점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에 민감성을 갖게 한다. 물론 성판매 여성의 인권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전제도 위험하다.²¹⁾ 성판매자의 경험과 목소리에 경청하고 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권의 구체적이며 다양한 내용을 접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일 것이다.

또한 ‘소수자’의 관점은 항시 타자를 만들어내는, 소수자를 특정방식으로 위치지우는 중심성에 대한 회의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여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위치시키고 규정하는 기제이다. 소수자 관점에 근거해 볼 때, 성판매 여성의 ‘문제’는 성판매 여성들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연구자, 사회복지사, 정책입안자 등 성판매 여성을 둘러싼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중심적 가치가 재고되고 점검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된다.

21) 스피박의 지적대로 “하위주체들에게 시혜적으로 주체성을 부여하면서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자는 지식인의 논리는 젠더화된 하위주체를 점점 더 비가시화하고 더 착취하는 구도를 강화하는” 함정이 있다(태혜숙, 2003, 재인용). 하위주체로 존재하는 성판매 여성들은 지배적인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배적인 헤게모니 안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순수하고 ‘진정한’ 목소리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조건에 대한 고려가, 그러나 그녀들이 말하고 있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로, 지배적인 담론의 ‘희생자’ 내지는 ‘꼭두각시’로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배담론의 코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론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자신들의 인식과 경험을 재규정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조건, 또는 말할 수 있게 하는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원미혜, 2005-b)

문제 해결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그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새로운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권보호의 실현: 법과 정의, 그리고 사회복지적 접근

법의 현실적 실효성은 법에 대한 일반적 동의여부에 의존하며, 법이 갖는 강제적 힘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강제를 정당화하고, 정당한 수단은 법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 사회적 소수자 운동과 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상호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이중적인 긴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법과 국가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근대법의 목적이 결코 모든 여성에게 정당하지는 않음을 논증해 왔다. 비판적이고 새로운, 여성의 입장과 관점에 입각한 법의 현실화는 그러므로 여성차별 근절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법은 때로 사회적 합의나 일반적 동의 이상으로,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합의와 동의는 기반이 아니라, 평등의 이념이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할 것이 되기도 한다. (김애령, 2005)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운동이 법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인권'에 귀기울여온 일차적 성과물이다. '성매매 피해자'라는 규정을 통해, 몸과 인격에 상처를 입고, 빗에 매이고 매매되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조차 없었던, 비어있던 '인권'개념에 성판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이 기입되고 한 부분의 내용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만성화된 성매매 문화와 성을 파는 여성을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원칙적인 법의 적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며, 때로 열악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모순적이며 심지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성적 실천'(sexual practice)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노동'으로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난한 논쟁을 필요로 하며, 논쟁의 지형은 담론을 만드는 주체들의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을 떠나 열악한 여성의 현실 앞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성윤리나 노동윤리가 더 우월한가에 대한 선명성의 경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²²⁾ 권력의 횡포에 민감한 많은 여성 주의 윤리학자들은 '명확분명함'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음'의 가치가 경합할 때, 후자의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허라금: 2004).

22) 퍼거슨(1996:27)은, 여성주의자들은 불완전한 현실에서 '과도기적 윤리'(transitional morality)로 연대해야 함을 지적한다. 그녀는 성매매가 이상적인 여성주의적 성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금지해야' 할 제도로써 비판받을 수 있지만, 과도기적 성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위험스러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한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서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녀는 결혼제도처럼, 성매매제도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을 남성의 통제에 종속시키는데, 그럼에도 특정 계급과 역사적 맥락에 놓인 개별여성은 이러한 제도 안에서 남성 지배에 대해 저항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매매이나 결혼에 자유롭게 참여했다고 스스로 보고 있는 개인은 도덕적으로 금지해야 할 실천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위험스러운 실천에 참여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면, ‘정의’ 개념 자체도 재고되어야 한다. ‘공평무사’라는 명목 하에, 원칙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와 법 시행은 복잡한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성판매자’를 일탈자나 범죄자 혹은 피해자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예외 없이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로 접근되어야 한다.²³⁾

현행법상 업주가 없이 일하는 개인형 성판매자의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이는 곧 사회복지적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의 원칙대로라면, 그들은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향후, 인터넷 등에 의한 일대일의 ‘개인형’ 성매매가 더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업주 없이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며, 구매자 등에 의한 ‘피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적 접근에 있어서도 현직 여성의 배제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떠나 소외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환경을 가진 성판매자의 건강권에 대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집결지 여성뿐 아니라, 산업형성매매, 개인형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²⁵⁾

인권 전반에 대한 의식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법률의 보장만으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에 의해서든, 성매매 공간에서든, 개인적 관계에서든, 성판매 여성들의 사회적 낙인은 그들을 침해당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판매 여성의 인권문제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폭력 신고 시 경찰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원미혜, 2002), 단속에 걸려 연행될 때 문단속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엄상미, 2002), 구타하는 손님을 신고할 권리, 경찰의 알몸수사에 항의할 수 있는 인권(조선일보, 2004), 건강을 돌볼 권리 등은 단지 성판매 경험자란 이유로 거부되었던 일상의 문제를 포

23)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로 상정하고 처벌을 면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청소년 성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미만의 ‘남녀’ 모두를 포함하며(제1장 제2조 1항), 자발/비자발의 구분을 떠나 형사처벌은 일체 면제된다.(제13조 및 제14조) 이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성매매 방지법’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규정이다. 이는 “이 법의 제정취지가 가치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제반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그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것”(“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석”, 2000. 12, 청소년보호위원회)이기 때문이다.

24) 윤방법에서 집결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접근은 성병검진과 교양교육, 부녀상담원의 상담정도가 고작이었다. 윤방법 하의 성병검진체계가 ‘깨끗한 성’, 전염병을 예방을 위해 존재해 왔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결과, 현재 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적 접근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전염병, 성병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환경을 가진 성판매자의 ‘건강권’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25) 외국의 경우, 성매매 정책의 기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판매 여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광고전단지과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성판매자와의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독일의 성구매자 운동에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성판매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들은 성구매자야말로 성판매 여성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브라질의 ‘페가시오 프로젝트’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에이즈 예방교육을 거부하던 성판매자(남성)에게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조집단을 구성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기도 했다. 또한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 또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성구매자에 대한 상담 등 사회복지적 접근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필화의, 2001; 원미혜, 2005-a 참조.

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신의 인권을 지킬 힘과 권리의식 또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권의 문제는 성매매 안과 밖에 존재하며 그것을 지키는 힘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성판매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가능하며, 어떤 관점과 태도로 접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정책은 성판매 여성 가진 문제들을 개인적 일탈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좋은 의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설정하여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치유, 교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피해자화 하는 방식으로 가시화해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판매 여성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관점과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접근한다는 것은 성적 소수자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주변성과 성매매를 강제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판매 여성의 ‘소수자’로서의 주변적 위치는 성적 위계질서에 대해서는 전복성을 갖지만 동시에 가부장제의 지배성에 종속적인, 이중적 위치성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전술적 주체성’의 관점에서 성판매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은 당사자의 행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주변인’으로서의 그들의 현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판매자를 피해자와 범죄자로 구분하는 법적,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성판매 여성에게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열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시적인 탈성매매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성매매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로, 우리사회가 가져갈 문제의 키워드는 지배적인 ‘성도덕’이 아니라, ‘성매매 감소’와 가장 열악한 성판매자의 ‘인권보호’에 있다. 성매매 정책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sexuality)이나 노동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다. 성판매 여성의 인권은 성판매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일 뿐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성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되지 않을 권리이다. 그리고 그 열악한 ‘인권’은 성산업 공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복합적인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의에 대한 분노나 정책의 현시적 정합성만으로는 부족하다. EU 여성위원회장의 말대로 “법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있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판매자와 사회복지가 만나야 할 이유이다.

〈 참고 문헌 〉

- 김애령(2005). “‘Women’ in the “Juvenile Sex Protection Law” and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in Korea: Ideas of Justice and the Practice of Law”, 제9차 세계여성학 대회, Sexuality 분과: Discourses and Policies on Commercial Sex, 패널 발표자료.
- 김애령·원미혜(2003).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의 전업에 대한 인식조사 I”, 『탈성매매,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 막달레나의집 엮음
- 김애령·원미혜외(2004).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II: 전업에 대한 설문조사』, 막달레나의 집 엮음.
- 김연자(2005). 『아메리카의 왕언니, 죽기 오분전 까지 악을 쓰다』, 삼인.
- 다시함께센터(2005). 『다시함께 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와 과제』, 2주년 기념 자료집
- 들뢰즈, 질 & 가타리, 펠릭스, 이진경·권혜원외 역(2000). 『천의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연구공간 ‘너머’자료실.
- 민경자(2005). “한국 성매매여성의 연대와 집단화”,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 민주성노동자연대 외(2005).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 백재희(2005). “한국사회의 성매매 담론, 정책 그리고 현실간의 ‘간극’”, 의료, 법률분야 전문직 여성활동가를 위한 여성학 세미나 :늘푸른 실무자아카데미IV』,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세미나 자료(미간행)
- 베리,캐더린, 김은정· 정금나 역(200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 서지영(2003). 『‘女聲’ 잡지와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아시아여성학센터 신여성 세미나 자료(미간행)
- 엄상미(2002). “어떤 역사: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조직”,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 원미혜(2003). 『그렇다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는가?: 성산업 종사 여성들에 관한 ‘역사쓰기’ 재고찰』, 막달레나의 집, 연구자를 위한 워크샵 자료집(미간행)
- _____ (2004). “여성주의 성정치학: 성매매 근절운동을 너머서”, 『여/성이론』, 제10호
- _____ (2005-a). “성매매 감소와 인권을 위한 모색 :해외의 경우”, 『황해문화』, 제46호
- _____ (2005-b). “여성 ‘인권’의 탐색을 위한 ‘위험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도전”, 『2005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 자료집
- 이금형(2004).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결과 및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공동포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성매매근절을위한한최리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포럼 자료집
- 이기연(2005), “생애사를 통한 역량발견”, 『가출 십대여성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사례관리 세미나: 늘푸른 실무자아카데미V』,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세미나 자료 (미간행).
- 이진경(2002).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1』, 휴먼이스트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 장필화 외(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 연구:여성부 연구용역과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정봉엽(2005).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공동포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성매매근절을위한한최리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포럼 자료집
- 조선일보. “윤락여성들 경찰 인권침해 조속조사 촉구”, 2002년 1월 4일자
- 최협 외(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올아카데미
- 퍼거슨, 앤(1996). “도덕적 위험부담, 매매춘”, 아시아여성학센터 편, 『제2차 아시아여성학워크샵: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제2차 아시아여성학워크샵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회의자료』 (미간행)
- 허라금(1998). “여성주의 윤리의 개념화 - 관계의 민주화를 향하여”, 한국여성학회 편, 『여성주의 윤리학: 이론과 그 응용』, 제1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허라금(2004).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철학과 현실사
- Sandoval, Chela(1991), “U.S Third World Feminism: The Theory and Method of Oppositional Consciousness in the Postmodern World”, *Genders*, Vol. 10 , pp.1-24p.
- Scott, W.Joan(1991), “Experience”, *Critical Inquiry*, Vol. 17 , pp.773-97
- Shrage, Laurie(1989). “Should feminist Oppose Prostitution?”, *Ethics*, Vol.99, pp348-362
- Truong, Thanh-Dam(1990),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London: Zed Books. Ltd.